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최근 식량, 식품의 해외 의존율이 심화되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비만, 아토피,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되고 있음.
- 나. 식생활 문제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됨.
- 다. 따라서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운동의 확산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각종 식생활으로 부터의 질병예방 및 건강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키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마련 (안 제5조)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나.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른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운영(안 제6조)
 -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시의 세부내용을 규정 함.

다.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식생활교육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심의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 함.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안 제11조)

-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역할, 관련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6.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시장이 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에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인천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6조(식생활교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가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관련 기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인천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관련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
4.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5. 식생활교육 시민단체 추천인
6. 생활협동조합 및 급식관련 단체 추천인
7.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단체 또는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8. 센터장
9.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10. 식생활교육 전문가 또는 소비자 단체대표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센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연계망 구축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활성화,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지역산농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지원
6. 학교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 지원
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 제공

③ 시장은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⑦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의 장이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식생활 교육 관련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전문 ○ 전문 ☐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 제1조(목적)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1조(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 식품위생법 ○ 제1조(목적) ☐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조 (목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제사항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8조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9조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 (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4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

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 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식생활 조사·연구)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청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물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0.5.25>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2. 소 요 비 용 : 약 2,403,600천원 (추정액)

	항목	내 용	금액(천원)
시 지역 센터	인건비	·센터장 1인×5,000천원×15개월×1개지역 ·실무급 5인×3,500천원×15개월×1개지역 (소 계)	75,000 262,500 337,600
	회의비	·회의 : 10,000천원×1개지역	10,000
	시설비	·사무실임대료 : 2,000천원×1개지역×12개월	24,000
	기타비용	·사무관리 등 : 10,000천원×1개지역	10,0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 12,000천원×1개지역	12,000
	소 계		393,600
군·구 지역 센터	인건비	·센터장 1인×5,000천원×15개월×10지역 ·실무급 2인×3,000천원×15개월×10지역 (소 계)	750,000 900,000 1,650,000
	시설비	·사무실임대료 : 1,000천원×12개월×10개지역	120,000
	기타비용	·사무실 관리비 등 : 2,000천원×12개월×10지역	240,000
	소 계		2,010,000
합 계			2,403,600

- ※ 1. 사업비 예산은 미포함(국비와 지방비 별도 예산 추진)
 2. 시 센터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5:5 부담
 3. 군·구 센터의 비용은 시와 군·구 지자체간 5:5 부담(지방비)